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508호)

2024. 1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	---

1.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정일영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3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윤호중의원안(2))	13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특례 확대(박성준 의원안, 윤호중의원안(2))	19
4.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신영대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김민전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송언석의원안, 정태호의원안)	31
5.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확대(서영교의원안, 박성준의원안, 정일영의원안, 박정의원안, 안도걸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조정훈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임광현의원안)	41

I. 개요

1.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50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호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2.

(3) 회 부 일 : 2024. 9. 3.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연간 출산율이 0.6명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커서 현행 공제제도로는 저출생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공제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민간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한편,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을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며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을 인상하

며,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근로자 및 종교관련종사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6) 신설).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지급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고 한도액을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52조제4항).

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장기주택저당차입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한도를 8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52조제5항).

라. 8세 이상의 공제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1명당 소득세 공제액을 20만원씩 인상함(안 제59조의2제1항).

마.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59조의4제3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정일영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일영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제12조제3호머목)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한도: 월 20만원) ☐ <신 설>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한도: 월 20만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 후 3년 안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한도: 월 20만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한도: 월 20만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한도: 월 20만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로 부터 최대 2회에 걸쳐 지급 받는

현 행	정일영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종교인소득도 동일하게 적용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2024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종교인소득도 동일하게 적용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률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u>급여 전액</u> *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 받은 급여를 포함하고, 사용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지급 받은 급여는 제외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률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일영의원안 2024. 6. 12. 제출(의안번호 362), 정성호의원안 2024. 6. 13. 제출(의안번호 442), 윤호중의원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08),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67)

□ 5건의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를 비과세하려는 것으로,

정일영의원안은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 후 3년 안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전액”을, 정성호의원안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를, 윤호중의원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로부터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을 각각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일영의원안과 윤호중의원안은 종교관련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출산 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은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을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2003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10만원의 비과세한도가 유지되다가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현행 및 개정안 비교]

비과세 한도	현행	정일영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	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출산 관련 급여	월 20만원	<u>급여 전액</u> (출산 후 3년)	<u>대통령령</u> <u>으로</u> <u>정하는</u> <u>급여</u>	<u>급여 전액</u>	<u>급여 전액</u> (출생 후 2년, 자녀당 최대 2회)
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급여		월 20만원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한도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¹⁾이 2017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 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²⁾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1)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2)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5	0.97	0.91	0.84	0.81	0.78	0.72

자료: 통계청

둘째,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직원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00기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기업 내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종합과세하게 되면 수령액 중 상당 부분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퇴색되고 지원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음.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셋째, 종합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의 차이에 따른 탈세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출산지원금은 기업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구매력과 담세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근로소

득에 해당함.

그런데 최근 낮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와 높은 종합소득세율(6%~45%) 회피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1억원 이하 10%)를 부담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행 법령 하에서는 사용자가 조세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출산한 근로자에게 보수의 형태가 아닌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증여라는 변형된 형태로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유인이 크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출산지원금이 적합한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비롯한 고소득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

2022년 기준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47만 2,38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 근로소득자의 2.3%에 불과하였고 1인당 평균 비과세분 신고액도 67만 9,000원으로 전체 한도액 120만원³⁾의 56.6%에 불과하였음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한 기업 중 500인 초과 기업은 56%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하 기업 비중은 18%에 불과함.

3) 2022년에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한도가 연 120만원(월 10만원)이었음

4) 국세통계포털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이처럼 출산지원금 비과세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는 직원의 복리후생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투자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더라도 현행 비과세 한도에 미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⁵⁾는 세부담에 변화가 없는 반면, 대기업에 재직 중인 고연봉자 등은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되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둘째, 비과세 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의 기본원칙 및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음.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세제상의 우대조치로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할 수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 요건과 한도를 신중히 검토하여 비과세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낮은 합계출산율을 극복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비과세 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다른 세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저소득 면세자는 2022년 33.6%로 조사됨(귀속연도 기준)

(2014) 48.1% (2015) 46.8% (2016) 43.6% (2017) 41.0% (2018) 38.9% (2019) 36.8% (2020) 37.2% (2021) 35.3%

셋째,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출산장려금으로 대체지급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행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규정하면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중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경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대부분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은 전액 과세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급여는 연 240만원까지, 급식수당은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함⁶⁾.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기한(2년) 및 횟수 제한(2회) 외에 별다른 조건 없이 지급받은 장려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

6)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여하고 있어, 현행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국세청은 출산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넷째, 비과세 한도 폐지에 따른 세수감면 규모의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정부는 2022년 연간 신생아 수와 2021년 대기업 종사자 비율 등을 감안하여 정부안에 따른 세수감 효과가 연 평균 329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일영의원안과 정성호의원안에 대하여 자녀 출산으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추가적인 급여를 받는 인원수 및 1인당 추가적인 급여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어려워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비과세 한도를 특정하지 않고 출산 관련 급여 전액으로 확대할 경우 출산급여의 비과세 정도를 사실상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가 정하게 되어 세수감면 규모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별 비용추계 결과 비교]

추계주체	추계대상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 평균
정부	정부안	△329	△329	△329	△329	△329	△1,645	△329

추계주체	추계대상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 평균
국회 예산정책처	정일영의원안	세수효과 추계 곤란 (출산에 따라 추가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 인원수 및 1인당 추가 급여액 추정 곤란)						
	정성호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태호의원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문 의 처

02)6788-5154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윤호중의원안(2))

현 행	윤호중의원안(2)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4항) ☐ 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대상금액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공제율 : <u>40%</u> ☐ 공제한도(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과 합산한 금액) : <u>400만원</u>	☐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 대상자 : (현행과 같음) ☐ 공제대상금액 : (현행과 같음) ☐ 공제율 : <u>60%</u> ☐ 공제한도 : <u>800만원</u>

* 윤호중의원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07, 3508)

☐ 2건의 개정안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공제와 합산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공제율을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른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제도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에서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써,

2000년 세법개정을 통해 당초 180만원이던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2022년 세법개정으로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연혁 및 개정안과 비교]

구분	96년 ~97년	98년 ~00년	01년 ~02년	03년 ~21년	22년	개정안
공제 한도	72만원	180만원	300만원			<u>800만원</u>
공제율	40%					<u>60%</u>
한도 기준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납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주: 1996~2000년의 경우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규정

자료: 기획재정부

현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인원은 2022년 귀속소득 기준 106만 9,207명이고 공제액은 약 1조 7,434억원으로, 매년 공제 적용인원 및 공제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원	434,743	476,724	525,604	623,775	766,302	893,437	1,026,696	1,069,207
금액	6,667	7,384	8,181	9,841	11,876	13,151	14,605	17,434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4-2-2

□ 개정안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 대비 2024년 전국 종합주택 전세가격은 m²당 약 223.5만원에서 약 280.2만원으로 연평균 4.63%, 수도권 평균 전세가격은 연평균 5.40%, 지방권은 3.56%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임금상승률은 3.07%에 그쳐 상용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비해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 간 종합주택 평균단위(m²당) 전세가격]

(단위: 만원, %)

구분	2019.8.	2020. 8.	2021. 8.	2022. 8.	2023. 8.	2024. 8.	연평균 증가율
전국	223.5	241.3	299.1	302.2	266.8	280.2	4.63%
수도권	317.6	346.7	450.8	455.3	389.0	413.1	5.40%
지방권	138.1	144.9	172.6	174.5	161.3	164.5	3.56%

주: 종합주택은 아파트 및 연립·단독주택을 포함함.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평균 상용임금상승률]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상승률	1.2%	3.9%	3.8%	3.4%	3.07%

주: 조사연도 4월 기준 자료

자료: 국가통계포털, 고용노동부

또한,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2년도 귀속소득부터 기존의 300만원보다 100만원 인상된 4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공제한도 적용인원 및 한도적용 비율이 2021년 대비 상승하였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공제비율 및 공제한도액이 상향조정되면 상당수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음.

[공제한도를 적용받은 인원 비율]

(단위: 명, %)

귀속연도	소득공제 적용인원(A)	공제한도 적용인원(B)	한도 적용비율 (B/A)
2018	623,775	199,856	32.0
2019	766,302	237,392	31.0
2020	893,437	262,622	29.4
2021	1,026,696	265,398	25.8
2022	1,069,207	305,087	28.5

주1: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과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

주2: 공제한도는 2021년 귀속소득까지는 300만원, 2022년 귀속소득부터 400만원 적용

자료: 국세청

둘째, 2023년도 세법개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 보임.

「소득세법」 제5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

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3개 제도의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⁷⁾가 각각 확대된 반면,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⁸⁾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2023년도 세법개정 내용 및 개정안 비교]

공제 한도					2023년 이전	현 행	개정안 ⁹⁾		
					96만원	120만원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87②)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52④)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52⑤)	15년 이상	원칙	400만원	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500만원	800만원	1,600만원
						고정금리 + 비거치식	1,500만원	1,800만원	3,6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1,8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3개 제도의 공제한도가 서로 연계되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됨

8)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됨

9)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합산 한도와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및 위 3개 공제의 합산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2023년도 세법개정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합산한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혜택이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크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

소득공제의 특성상 적용세율이 높을수록 세감면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이 증가함.

또한, 2022년 기준 33.6%에 달하는 면세자의 경우 공제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2년 세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20년 넘게 유지되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한도액 상향에 따른 효과 등 시행경과를 일정 기간 관찰한 이후 추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특례 확대(박성준 의원안, 윤호중의원안(2))

현 행	박성준의원안	윤호중의원안(2)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외국인 포함) * 다만, 주택분양권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 ○ 공제대상: 기준시가 <u>6억원</u> 이하 주택(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 다만, 주택분양권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부 차입금 이자 상환액으로 한정 ○ 공제한도: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연 <u>600만원~2,000만원</u> <table border="1"> <tr> <td>상환기간</td><td>상환방식</td><td>공제한도</td></tr> <tr> <td>15년 이상</td><td>고정금리+비거치식</td><td>2,000만원</td></tr> </table>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2,000만원	□ 주택가액기준 상향조정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 대상자: (현행과 같음) ○ 공제대상: 기준시가 <u>9억원</u> 이하 주택(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 다만, 주택분양권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부 차입금 이자 상환액으로 한정 ○ (현행과 같음)	□ 공제한도 상향조정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508)」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과 합산한 소득공제 한도를 함께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507)」 ○ 대상자: (현행과 같음)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한도: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연 <u>1,200만원~4,000만원</u> <table border="1"> <tr> <td>상환기간</td><td>상환방식</td><td>공제한도</td></tr> <tr> <td>15년 이상</td><td>고정금리+비거치식</td><td>4,000만원</td></tr> </table>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4,000만원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2,000만원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4,000만원												

현행			박성준의원안		윤호중의원안(2)					
	고정금리	<u>1,800만원</u>				고정금리	<u>3,600만원</u>			
	비거치식									
	기타					<u>800만원</u>				
	10년~15년	고정금리				<u>600만원</u>				
비거치식										
☐ 부칙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 등에 대한 장기주택정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박성준의원안 2024. 8. 14. 제출(의안번호 2829), 윤호중의원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07, 3508)

☐ 3건의 개정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적용 하려는 것으로,

박성준의원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요건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고,

2건의 윤호중의원안은 상환기간·방식별로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고(「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6항), 이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과의 합계액에 대한 합산 공제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른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주택분양권 포함) 취득을 목적으로 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연 600만원~2,000

만원 한도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써, 현행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¹⁰⁾ 6억원 이하인 주택(또는 주택분양권)임.

소득공제 대상인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기준가액은 지난 2005년 세법개정으로 법률에 명시되었으며, 당시 “3억원 이하”이던 기준가액은 2014년부터 “4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음.

이후 2018년 주택의 기준가액만 “5억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2020년 “주택분양권” 기준가액도 5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23년 주택과 주택분양권 기준가액이 동일하게 “6억원 이하”로 상향되어 2024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한편, 2013년까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14년부터 면적기준이 폐지되었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관련 연혁]

구 분		2005년 개정	2014년 개정	2018년 개정	2020년 개정	2023년 개정
기준 가액	주택	3억원 이하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분양권			4억원 이하		
면적기준		국민주택규모 이하	-			

10) 이 때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함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한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i)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ii)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상환인 경우에는 1,800만원, 기타의 경우 iii) 800만원이 적용되고, 상환기간이 10년~15년인 경우에는 iv)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경우에 한하여 600만원이 적용되는데,

동 한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 금액¹¹⁾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¹²⁾과 합산하여 적용됨.

11)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에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공제 한도					현 행	윤호중 의원안	
					120만원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87②)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52④)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52⑤)		<u>400만원</u>	<u>800만원</u> 13)
					원칙	<u>800만원</u>	<u>1,600만원</u>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u>1,800만원</u>	<u>3,600만원</u>
					고정금리 + 비거치식	<u>2,000만원</u>	<u>4,000만원</u>
					10년 이상	<u>600만원</u>	<u>1,200만원</u>

참고로 2022년 귀속소득 기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인원은 약 187만명, 공제액은 약 6.2조원으로, 공제 적용인원 및 공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연도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원	1,358,771	1,492,996	1,620,721	1,746,184	1,837,852	1,869,286
금액	3,571,303	4,338,207	4,869,724	4,962,150	5,398,597	6,203,184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4-2-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II(원천징수지)

□ 개정안은 ① 주택 기준시가 요건을 상향조정하려는 부분과 ② 공

13) 윤호중의원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와 함께 무주택세대 세대주가 지급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제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요건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박성준의원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수 있음.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주택가액 요건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약 64.2만호(4.21%)가 조세특례 대상에 추가되어 신규 대상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이로 인한 주거안정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4년 공시가격 기준 공동주택가격 분포 현황]

(단위: 만호, %)

구분	합계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2억원	2억원 ~ 3억원	3억원 ~ 6억원	6억원 ~ 9억원	9억원 초과
전국	1,523.4	153.2	289.4	441.8	256.2	272.0	64.2	46.6
(비중)	100	10.05	19.00	29.00	16.82	17.86	4.21	3.06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4. 8.

둘째,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감안할 때 소득공제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2024년도에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모두 상승하여, 2023년 10년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던 변동

률이 1년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음.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추이]

(단위: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표준 단독주택	3.5	3.8	4.15	4.75	5.51	9.13	4.47	6.80	7.36	△5.95	0.57
개별 단독주택	3.7	4.0	4.29	4.39	5.12	6.97	4.33	6.10	6.56	△4.93	0.64
공동주택	0.4	3.1	5.97	4.44	5.02	5.23	5.98	19.1	17.2	△18.6	1.52

자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택 기준가액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 한 뒤 2023년에 6억원으로 1억원 확대하였으나, 물가 상승 및 공시가격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실제로 2018년 대비 2024년에 공시지가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비중은 1.75%에서 4.21%로 약 2.4배 상승하였음.

[연도별 공동주택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단위: 만호, %)

연도	합계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2억원	2억원 ~ 3억원	3억원 ~ 6억원	6억원 ~ 9억원	9억원 초과
2018년	1289.0 (100%)	137.0 (10.62%)	284.3 (22.06%)	462.6 (35.89%)	218.6 (16.96%)	149.9 (11.63%)	22.6 (1.75%)	14.1 (1.09%)
2023년	1486.4 (100%)	149.3 (10.06%)	276.4 (18.60%)	436.4 (29.36%)	261.0 (17.56%)	260.3 (17.51%)	60.6 (4.08%)	42.5 (2.86%)
2024년	1,523.4 (100%)	153.2 (10.05%)	289.4 (19.00%)	441.8 (29.00%)	256.2 (16.82%)	272.0 (17.86%)	64.2 (4.21%)	46.6 (3.06%)

자료: 국토교통부, 연도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 다만, 주택 기준시가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기준시가 상향조정에 따른 세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에 의해 새롭게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는 기준시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상위 3.06%~7.27%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비중 현황]

연도	5억원	6억원	9억원	11억원	12억원	13억원	14억원
2024년	상위 10.2%	상위 7.3%	상위 3.1%	상위 2.1%	상위 1.8%	상위 1.5%	상위 1.2%
2023년	상위 9.8%	상위 6.9%	상위 2.9%	상위 1.9%	상위 1.6%	상위 1.3%	상위 1.0%
2022년	상위 16.1%	상위 11.0%	상위 5.2%	상위 3.1%	상위 2.6%	상위 2.1%	상위 1.8%
2021년	상위 11.6%	상위 7.9%	상위 3.7%	상위 2.2%	상위 1.8%	상위 1.5%	상위 1.3%
2020년	상위 6.9%	상위 4.9%	상위 2.2%	상위 1.6%	상위 1.3%	상위 1.1%	상위 0.9%

자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둘째, 소득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 대상 주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64.2만호 중 60.0%에 달하는 38.5만호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91.3%

인 58.6만호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위치하고 있음.

전국 공동주택 중 서울에 위치하는 비중이 18.0%, 수도권이 52.7%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라 공제대상으로 신규 편입되는 고가주택의 대부분이 서울 및 경기도에 한정되어 특정 지역에 한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2024년 공동주택 시·도별·가격수준별 분포현황]

(단위: 만호, %)

구분	합계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2억원	2억원 ~ 3억원	3억원 ~ 6억원	6억원 ~ 9억원	9억원 초과
전국	1523.4 (100%)	153.2	289.4	441.8	256.2	272.0	64.2 (100%)	46.6
수도권	803.5 (52.7%)	29.4	99.0	206.7	153.6	211.5	58.6 (91.3%)	44.9
서울	273.7 (18.0%)	0.8	17.6	62.3	37.7	78.8	38.5 (60.0%)	38.1
경기	427.8 (28.1%)	19.2	57.6	113.5	96.4	115.5	19.1 (29.8%)	6.6
인천	102.0 (6.7%)	9.4	23.8	30.9	19.5	17.2	1.0 (1.5%)	0.2
그 외	719.9 (47.3%)	123.8	190.4	235.1	102.6	60.5	5.6 (8.7%)	1.7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4. 8.

□ 다음으로 ②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윤호중의원안은 매년 가중되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이자상환액 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10여년간 주택 공시가격 추이를 보면,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상승하고 있어 기준시가 한도에 가까운

가격의 주택을 취득하는 인원이 증가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자상환액 한도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추이]

(단위: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표준 단독주택	3.5	3.8	4.15	4.75	5.51	9.13	4.47	6.80	7.36	△5.95	0.57
개별 단독주택	3.7	4.0	4.29	4.39	5.12	6.97	4.33	6.10	6.56	△4.93	0.64
공동주택	0.4	3.1	5.97	4.44	5.02	5.23	5.98	19.1	17.2	△18.6	1.52

자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다만, 공제한도 상향조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귀속소득 기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한도액까지 받은 인원은 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인원 1,869,286명 (2022년 기준) 중 10만명 남짓으로 약 5.6%에 불과하여 한도 상향에 따른 수혜층이 제한적이고,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각각 확대조정하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19년~2022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액 적용 인원 수]

(단위: 명)

귀속 연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합 계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19	466	1,588	51,901	17,216	71,171
2020	390	1,380	47,138	12,786	61,694
2021	401	1,519	57,543	10,500	69,963
2022	437	3,606	90,308	10,300	104,651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세법개정 내용]

공제 한도					2023년 이 전	2023년 세법개정	증가액		
					96만원	120만원	24만원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87②)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52④)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52⑤)	4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1,800만원	2,000만원	2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만원	1,800만원	300만원
					15년 이상	기타	500만원	800만원	3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만원	600만원	300만원	

□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승하다가 최근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최근 10년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



자료: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 9.

문 의 처

02)6788-5154

4.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신영대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민전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송언석의원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신영대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김민전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	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 자녀세 액공제 (제59 조의2)	□ 일반공 제 및 출생· 입 양 공 제 확대	□ 일반공 제 및 출생· 입 양 공 제 확대	□ 일반공 제 및 출생· 입 양 공 제 확대	□ 일반공 제 및 출생· 입 양 공 제 확대	□ 일반공 제 확대 및 자녀 연령제 한 폐지	□ 일반공 제 확 대	□ 일반공 제 및 출생· 입 양 공 제 확대
○ 일 반 공제	○ 일 반 공제	○ 일 반 공제	○ 일 반 공제	○ 일 반 공제	○ 일 반 공제	○ 일 반 공제	○ 일 반 공제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1명 : <u>15만원</u>	1명 : <u>30만원</u>	1명 : <u>50만원</u>	1명 : <u>30만원</u>	1명 : <u>30만원</u>	1명 : <u>35만원</u>	1명 : <u>25만원</u>	1명 : <u>30만원</u>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2명 : <u>35만원</u>	2명 : <u>70만원</u>	2명 : <u>100만원</u>		2명 : <u>65만원</u>	2명 : <u>75만원</u>	2명 : <u>55만원</u>	2명 : <u>60만원</u>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 자 녀
3명 이상: <u>35 만 원</u>	3명 이상: <u>70 만 원</u>	3명 이상: <u>100만원</u>	2명 이상: <u>30 만 원</u>	3명 이상: <u>65 만 원</u>	3명 이상: <u>75 만 원</u>	3명 이상: <u>55 만 원</u>	3명 이상: <u>60 만 원</u>
+ 초과 1 명 당 <u>30만원</u>	+ 초과 1 명 당 <u>100만원</u>	+ 초과 1 명 당 <u>100만원</u>	+ 초과 1 명 당 <u>50만원</u>	+ 초과 1 명 당 <u>40만원</u>	+ 초과 1 명 당 <u>50만원</u>	+ 초과 1 명 당 <u>40만원</u>	+ 초과 1 명 당 <u>30만원</u>
○ 출생· 입양공제	○ 출생· 입양공제	○ 출생· 입양공제	○ 출생· 입양공제	○ 출생· 입양공제	○ 출생· 입양공제	○ 출생· 입양공제	○ 출생· 입양공제
- 첫째: <u>30만원</u>	- 첫째: <u>100만원</u>	- 첫째: <u>100만원</u>	- 첫째: <u>50만원</u>	- 첫째: <u>60만원</u>	(현행과 같 음)	(현행과 같 음)	- 첫째: <u>50만원</u>
- 둘째: <u>50만원</u>	- 둘째: <u>200만원</u>	- 둘째: <u>150만원</u>	- 둘째: <u>80만원</u>	- 둘째: <u>80만원</u>			- 둘째: <u>70만원</u>
- 셋째: <u>70만원</u>	- 셋째: <u>300만원</u>	- 셋째: <u>200만원</u>	- 셋째: <u>100만원</u>	- 셋째: <u>100만원</u>			- 셋째: <u>100만원</u>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현 행	신영대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김민전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	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8세	(현 행 과 같음)	(현 행 과 같음)	(현 행 과 같음)	(현 행 과 같음)	<폐 지>	(현 행 과 같음)	(현 행 과 같음)

* 신영대의원안 2024. 6. 5. 제출(의안번호 180), 윤준병의원안 2024. 7. 4. 제출(의안번호 1367), 안도걸의원안 2024. 7. 22. 제출(의안번호 2058), 김민전의원안 2024 .8. 12. 제출(의안번호 2729), 윤호중의원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08),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18), 송언석의원안 2024. 9. 25. 제출(의안번호 4256),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67)

□ 8건의 개정안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른 공제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 등 자녀세액 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 자녀세액공제제도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세 이상에 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이하 “일반공제”)하는 한편,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이하 “출산·입양공제”)하는 제도임.

□ 먼저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일반공제의 경우 2006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5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처음 도입되었음.

이후 2013년 자녀 관련 소득공제 제도를 정비하면서 자녀가 2명 이내인 경우 1명당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2015년 세법개정 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되었음.

또한, 2018년 9월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7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¹⁴⁾하도록 하였고, 이후 2021년 12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 세법개정에서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연령을 8세 이상으로 축소하였음.

이후 2023년 세법개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녀를 일반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5만원 상향조정하였음.

한편,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2015년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16년 세법개정 이후부터 자녀 수 별로 차등하여 확대 지급해 오고 있음.

14) 아동수당의 지원혜택(자녀 1인당 연 120만원 지급)이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연 15~30만원 세액공제) 혜택보다 크고,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 면세자에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음.

[자녀세액공제 제도 연혁]

구분	2006년 개정	2013년 개정	2015년 개정	2016년 개정	2018년 개정	2022년 개정	2023년 개정
일반 공제	<u>*소득공제 방식</u>	<u>*세액공제 방식</u>					
	-자녀 2명 이내 : 총 50만원	-자녀 2명 이내 : 1명당 15만원			(좌동) *자녀연령 7세 이상 으로 한정	(좌동) *자녀연령 8세 이상 으로 한정	-1명: 15만원 -2명: <u>35만원</u> -2명 초과: 35만원+초과 1명당 30만원 <u>*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 포함</u>
	-자녀 2명 초과 : 1명당 100만원	-자녀 2명 초과 : 1명당 20만원	-자녀 2명 초과 :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 공제	-		1명당 30만원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 70만원			

□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소기의 정책효과가 기대됨.

첫째,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¹⁵⁾이 2016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¹⁶⁾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녀 수에 비례한 세제 지원 필요성

15)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16)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5	0.97	0.91	0.84	0.81	0.78	0.72

자료: 통계청

특히 기본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자녀장려금, 기저귀·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합계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출산·양육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세목	유형	구체적 내용				근거							
소득세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관련 급여(6세 이하, 월 20만원) 비과세				소득법 §12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비과세											
	소득공제	· 20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				소득법 §50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소득법 §59-2							
		<table><tr><td>8세 이상 자녀 수</td><td>1명</td><td>2명</td><td>3명 ~</td></tr><tr><td>세액공제액</td><td>연 15만원</td><td>연 35만원</td><td>연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td></tr></table>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15만원	연 35만원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15만원	연 35만원	연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table><tr><td>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td><td>첫째</td><td>둘째</td><td>셋째</td></tr><tr><td>공제액</td><td>연 30만원</td><td>연 50만원</td><td>연 70만원</td></tr></table>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액 (연 700만원 한도(단, 6세 이하 자녀는 세액공제 한도없음),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포함, 공제율 15%)				소득법 §59-4②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련의료비(공제율 20%)											
		- 난임시술 관련 지출비용(공제율 30%)											

세 목	유 형	구 체 적 내 용	근 거
		·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소득법 §59-4③
	자녀 장려금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조특법 §100-28 ~ §100-31
부가 가치세	면세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면세	조특법 §106
		· 산후조리원 면세	부가령 §35

둘째, 유자녀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유자녀가구와 독신가구의 세부담 차이가 적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 출생 및 양육에 따른 추가적 세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평균소득을 받는 독신가구의 조세격차(tax wedge, 세부담 수준)는 24.6%이고 자녀가 2명인 외벌이 가구는 19.1%의 조세격차에 직면해 가구형태에 따른 조세격차 차이가 5.5%p로, OECD 평균인 9.1%p의 60%에 불과함¹⁷⁾.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함¹⁸⁾.

17) OECD, “Taxing Wages 2024”, 2024

18) 한국경제연구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검토”, 2022

[OECD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¹⁾]

(단위: %, %p)

국가	2자녀 외벌이가구 조세격차 ²⁾	독신가구 조세격차 ³⁾	차이
독일	33.1	47.9	14.8
미국	19.7	29.9	10.2
프랑스	39.1	46.8	7.8
대한민국	19.1	24.6	5.5
일본	27.9	33.0	5.1
OECD 평균	25.7	34.8	9.1

주: 1) 조세격차(tax wedge)란 고용주가 부담하는 노동사용비용(labor costs, 급여 및 고용주분 사회보험료가 포함됨)에서 ‘개인소득세+사회보험료-현금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세부담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2) One earner married couple with two children and earnings at the average wage level

3) Single individual without children and earnings at the average wage level

자료: OECD, “Taxing Wages 2024”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자녀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정책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공제액 상향은 과세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녀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은 개인의 소득수준, 가치관, 주거형태,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의사결정임.

또한, 영유아 가구의 연간 가구당 양육비용은 2018년 1,399만 2,000원에서 2022년 1,527만 6,000원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¹⁹⁾, 세제지원을

19)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2023

일부 확대하더라도 양육부담의 경감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은 양육부담 경감과 저출생의 해소라는 정책목표 달성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세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 가구의 연간 총 양육비용 변화]

(단위: 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양육비용	1,339	1,494	1,416	1,531	1,528
영유아 양육비용	1,116	1,117	1,038	1,106	1,082

* 위 표의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모든 자녀(초등학생 이상 자녀까지 포함)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고, 영유아 양육비용은 취학 전 영유아에 한정하여 소요된 비용만을 의미함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2022

둘째, 일반공제액 확대와 관련하여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일반공제액을 5만원 상향조정함으로써 자녀세액 공제의 확대를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 유도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었음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당시 상향하고자 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이 상이한 7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²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출생 상황의 심화로 인한 자녀세액공제 확대의 필요성 및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자녀세액공제 중 일반공제의 공제액을 5만원 상향조정하

20) 강훈식의원안(의안번호 3401), 박광온의원안(의안번호 10718), 고용진의원안(의안번호 16486), 서영교의원안(의안번호 18354), 박성준의원안(의안번호 19155), 진선미의원안(의안번호 24044), 신동근의원안(의안번호 24714)

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더라도 2022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6%²¹⁾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해당 공제의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여 정책 대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등 대체적인 정책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연령을 폐지하려는 윤호중의원안과 관련하여 아동수당과의 중복지원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동수당 도입 당시, 아동수당의 지원혜택(자녀 1인당 연 120만원 지급)이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연 15~30만원 세액공제) 혜택보다 크고,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 면세자에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하지 않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의 연령 제한을 설정하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자녀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3년 8,528억원 수준에서 2024년에는 8,245억원, 2025년에는 9,34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연도별 자녀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금액	8,879	8,568	8,534	8,528	8,245	9,34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1) 202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자는 690만명(33.6%)임.)

문 의 처
02)6788-5154

5.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확대
(서영교의원안, 박성준의원안, 정일영의원안, 박정의의원안, 안도걸의원안,
박수민의의원안, 조정훈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임광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3항 제1호) ○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유치원, 초·중·고 각급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 - <신 설> ○ 세액공제율: <u>15%</u> ○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공제한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연 <u>300만원/명</u>	□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u>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교육비의 160%로 계상</u>)(조정훈의원안)를 합산한 금액 - (현행과 같음) - <u>초등학생의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서영교·안도걸·정일영의원안)</u> - <u>초등학생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박수민·박정·조정훈의원안)</u> - <u>초·중학생의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임광현의원안)</u> - <u>초·중·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지급한 교습비등(박성준의원안)</u> ○ 세액공제율: <u>30%</u>(윤호중의원안) ○ 공제한도 확대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연 <u>400만원/명</u>(박정·안도걸의원안) 연 <u>500만원/명</u>(박성준의원안)

* 서영교의원안 2024. 6. 7. 제출(의안번호 196), 박성준의원안 2024. 6. 14. 제출(의안번호 508), 정일영의원안 2024. 6. 20. 제출(의안번호 685), 안도걸의원안 2024. 6. 24. 제출(의안번호 835), 박정의의원안 2024. 6. 26. 제출(의안번호 949), 박수민의의원안 2024. 6. 28. 제출(의안번호 1133), 조정훈의원안 2024. 7. 3. 제출(의안번호 1325), 윤호중의원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08), 임광현의원안 2024. 9. 5. 제출(의안번호 3676)

□ 9건의 개정안은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상향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① (적용대상 확대) 현행법은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만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영교·안도걸·정일영의원안은 초등학생의 음악·미술·무용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박수민·박정·조정훈의원안은 초등학생의 전체 학원과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임광현의원안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음악·미술·무용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박성준의원안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전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공제대상 학생	대상 학원, 시설 등	비 고
초등학생	예능학원, 체육시설	서영교·안도걸·정일영의원안
	전체 학원, 체육시설	박수민·박정·조정훈의원안
초등학생, 중학생	예능학원, 체육시설	임광현의원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박성준의원안

② (공제한도 및 공제율 상향) 박정·안도걸의원안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박성준의원안은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이고,

조정훈의원안은 해당 교육비의 1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지출한 교육비의 24%를 공제²²⁾하려는 것이며, 윤호중의원안은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려는 것임.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각종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각급학교, 평생교육시설, 국외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교육비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동 제도는 지난 1977년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이 확대

22) 현행법상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이므로, 실제 교육비를 100만원이라 하였을 때 개정안과 같이 100만원의 160%인 16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공제액이 24만원이 되어, 실제 지출한 교육비 100만원에 24%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남.

되어 왔음. 2008년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2013년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2016년 세법개정으로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및 연 30만원 한도의 현장체험학습비(시행령 개정)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음.

2022년 세법개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음.

□ 9건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²³⁾이 2016년 1.17명 수준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바,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23) 15세~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17	1.05	0.98	0.92	0.84	0.81	0.78

자료: 통계청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2018년 64.3만원²⁴⁾에서 2021년 72.1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교육비 비중은 2018년 51.1%, 2021년 44.0%로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의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18년 (비중)	2.1 (3.3)	11.2 (17.4)	21.7 (33.7)	2.2 (3.4)	28.3 (44.0)	64.3 (100.0)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2018년의 경우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의미함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둘째,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인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참

24) 분석의 편의상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함.

여율이 50.3%, 초등돌봄교실 참여율이 11.5%에 불과²⁵⁾한 상황에서, 학교 이후의 자녀돌봄을 위해 부득이하게 초등학교 자녀를 체육시설에 보내는 맞벌이 부부들이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맞벌이 부부의 실질적인 돌봄비용을 지원하게 되므로 해당 맞벌이 부부의 돌봄부담 및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셋째, 예체능 학원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예체능 분야는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예체능 학원이 재능계발 및 보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술·체육활동은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며,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는데, 공교육의 예체능 수업시수 증가를 통한 교육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사교육이 필요한 영역으로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미·교양 및 재능계발을 위해서 예체능 관련 사교육을 수강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63.6%를 차지하였으며, 보육을 위해서 수강한다는 비중이 17.5%로 일반교과의 사교육보다 보육 목적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25)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24. 2. 5.

[예체능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2023년)]

(단위 : %)

구분	진학준비	학교수업 보충	취미·교양 및 재능계발	친구를 사귀기 위해	보육	기타
초등학교	3.2	5.9	63.6	8.8	17.5	1.0

자료: 통계청,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4. 3.

[일반교과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2023년)]

(단위 : %)

구분	진학준비	학교수업 보충	선행학습	불안심리	보육	기타
초등학교	6.1	49.8	25.3	2.8	12.2	3.8

자료: 통계청,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4. 3.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저출산의 원인인 경제적 부담 중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정안의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초·중고등학생의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사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일반 가정이 공교육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중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중 사교육비의 비중이 공교육비의 비중보다 크고 2022년 대비 2023년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 참여시간 등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 공제한도의 확대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영유아	7.1	0.1	8.9	6.1	38.3	60.6
초등학생	-	2.7	42.7	2.1	31.1	78.5
중고등학생	-	4.6	50.6	-	36.6	91.9
대학생 이상	-	28.0	2.8	-	42.8	73.6

*2018년의 경우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의미함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및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 비교]

구 분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전 체	26.0조원	27.1조원	78.3%	78.5	7.2시간	7.3시간
초등학교	11.9조원	12.4조원	85.2%	86.0	7.4시간	7.5시간
중 학교	7.1조원	7.2조원	76.2%	75.4	7.5시간	7.4시간
고등학교	7.0조원	7.5조원	66.0%	66.4	6.6시간	6.7시간

자료: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24. 3.

둘째, 교육비 세제지원 확대의 혜택이 역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자녀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소득자일수록 교육비 등 지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액의 일정비율로 이루어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귀착될 것이고,

[가구소득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60%	1.6	3.2	11.6	0.5	29.2	46.1
60%~80%	3.2	3.0	16.6	0.2	29.8	52.8
80%~100%	2.8	4.9	23.1	0.8	34.2	65.8
100%~120%	3.2	5.9	25.8	2.8	34.2	71.9
120%~140%	2.7	6.2	29.2	3.5	35.7	77.3
140%~160%	2.8	6.8	30.6	6.4	36.2	82.8
160%~	2.9	9.9	44.4	6.6	6.6	70.4

*가구소득은 2021년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원)이 100%에 해당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6%²⁶⁾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개정안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적용이 되지 않음.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²⁷⁾에 따른 교습비등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은 개인과외 교

26) 202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자는 690만명(33.6%)임.

2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습비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므로, 보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귀속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대규모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
으로 우려됨.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최소 1조 1,480억원에서 최대 5조 742억원
의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추계결과를 제시하였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2026년~2030년)]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누적	연평균
서영교 의원안	-2,644	-2,486	-2,297	-2,106	-1,947	-11,480	-2,296
박성준 의원안	-10,870	-10,464	-10,127	-9,817	-9,464	-50,742	-10,148
정일영 의원안	-2,644	-2,486	-2,297	-2,106	-1,947	-11,480	-2,296
안도걸 의원안	-3,309	-3,121	-2,902	-2,680	-2,493	-14,505	-2,901
박정 의원안	-4,840	-4,560	-4,232	-3,900	-3,621	-21,152	-4,230
박수민 의원안	-3,681	-3,461	-3,198	-2,931	-2,710	-15,981	-3,196
조정훈 의원안	-4,571	-4,312	-4,010	-3,705	-3,447	-20,044	-4,009
임광현 의원안	-3,472	-3,300	-3,118	-2,930	-2,755	-15,575	-3,115
윤호중 의원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61